

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7. 7. 12.

건설문화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7년 6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7월 4일

상정일자 :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○ 2007. 7. 12 :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본부장 신 동 인)

제안 이유

○ 「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충청북도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사무가 동 법률이 폐지 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
주요 내용

○ 충청북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문화전문위원 신승우)

- 충청북도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사무가 동 법률이 폐지되고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의 시행으로 시장」군수가 수렵장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써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조례 폐지시 도출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(조례 제02766호, 2003. 8.29)
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【야생동·식물보호법】

제42조 (수렵장의 설정 등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(이하 "수렵장"이라 한다)를 설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31>

②누구든지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,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3.31>

④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,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3.31>

⑤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5.3.31>

⑥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 및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, 수렵장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3.31>

【야생동·식물보호법 시행령】

제28조 (수렵장의 설정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9.14>

【야생동·식물보호법 시행규칙】

제49조 (수렵장설정의 고시)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
2. 존속기간
3. 수렵기간
4. 관리소의 소재지
5.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
6.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
7.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
8. 수렵인의 수

제50조 (수렵장설정 승인신청) ①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수렵장설정계획서
2. 수렵장관리 및 운영계획서
3. 수렵장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
4. 수렵할 수 있는 동물별 서식상황 조사내역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
5. 수렵장관리에 관한 수입·지출예산명세서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수렵장 관리소의 소재지
2. 수렵기간·이용방법·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요금
3. 인공증식·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 내역
4. 수렵장안에서의 수렵금지구역 지정
5.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
6. 그 밖에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내역

제51조 (수렵장 시설 등의 설치기준)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 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

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·설비는 다음과 같다.

1. 수렵장 관리소
2.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
3. 응급 의료시설
4. 사격연습시설
5.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(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에 한한다)
6.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
7. 수렵장의 경계표지 시설
8. 안전관리시설

【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】

제13조(수렵장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수의 보호·번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97.8.22>

②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 밖에서는 수렵조수를 포획하지 못한다.

③ 수렵장안에서 수렵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조수를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획한 조수의 종류, 포획수량등에 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94.3.24, 96.8.8, 99.5.24>

⑤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안에 수렵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위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⑥ 수렵장 사용료등 수입은 수렵장 시설의 설치·유지 및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보호관련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

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중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⑦ 수렵장안에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97.8.22, 99.5.24>

⑧ 수렵장설정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97.8.22, 99.5.24>

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을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【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령】

제11조(수렵장의 설정)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(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얻어야 한다.<개정 1999.5.24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<개정 1994.9.24, 1999.5.24>

1. 수렵장설정계획서
2. 수렵장관리 및 운영계획서
3. 수렵장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하는 도면
4. 수렵조수별 서식상황조사내역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
5. 수렵장관리에 관한 수지에산명세서
6.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서류

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수렵장의 명칭과 관리소의 소재지
2. 수렵장의 위치·구역과 존속기간

3. 수렵기간·사용방법·사용료 및 조수별 포획료
4. 수렵조수의 인공증식과 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
5. 수렵금지구역의 지정과 포획수량
6. 수렵방법 및 엽구
7. 수렵장 종사자에 관한 사항
8. 기타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

④수렵장 설정자는 제3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제3항제1호·제4호·제6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5.24>

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1990.1.3, 1994.12.23, 1999.5.24>

⑥삭제<1998.2.24>

【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】

제20조 (수렵장설정 승인신청)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설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1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5.24>

제21조 (수렵장설정의 고시)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설정의 고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<개정 1998.5.7>

1. 수렵장의 이름
2. 구역
3. 존속기간
4. 수렵기간
5. 관리소의 소재지
6. 수렵장의 사용료
7. 엽구와 수렵방법
8. 수렵조수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
9. 포획료